

##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-732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
· 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 
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·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 조례」  
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  
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  
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10월 13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

### 「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·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 조례」 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제정이유

- 중구 내 결핍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중구민 등의 의료서비스 강화
- 낮시간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 및 야간·휴일에 발생하는 경증환자 진료를 통해 응급실 과밀화 방지로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
- 목적 : 공공 야간·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(이하 "중구민"이라 한다)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

나. 지정 및 지원 (안 제4조)

- 대상 :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 
(가정의학과, 내과, 소아청소년과,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목)
-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야간·휴일 진료의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운영시간을 정함  
① 평일(19시~다음날 오전1시) ② 토요일(15시~21시) ③ 휴일(9시~21시)
-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

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의약과장, 주소 : 서울시 중구 다산로39길 16, 4층 의약과 의무팀), 전화 : 02-3396-6404, 팩스 : 02-3396-8910, 전자우편 : songjm1231@seoul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 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##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·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공 야간·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(이하 "중구민"이라 한다)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공공 야간·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"(이하 "야간·휴일 진료의원"이라 한다)이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지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.
2. "야간"이란 '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'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비가산제가 적용 가능한 평일 18시~다음날 9시 사이의 시간대를 말한다.
3. "휴일"이란 토요일 및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.
4. "보건의료서비스"란 야간·휴일 진료의원에서 행해지는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국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구청장은 야간·휴일 진료의원을 지정하고 중구

민 등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야간·휴일 진료의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정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중구민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야간·휴일 진료의원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야간·휴일 진료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시간을 정한다.

1. 평일: 19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

2. 토요일: 15시부터 당일 21시까지

3. 휴일: 9시부터 당일 21시까지

③ 구청장은 야간·휴일 진료의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간·휴일 진료의원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**별표1**과 같이 한다.

⑤ 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한 금액은 **별표2**와 같이 한다.

제5조(관리) ① 구청장은 야간·휴일 진료의원의 운영실태를 확인·조사할 수 있고, 야간·휴일 진료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·조사 결과, 야간·휴일 진료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·휴일 진료의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

다.

제6조(기관의 의무) 공공 야간·휴일 진료위원의 장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공공 야간·휴일 진료위원 운영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「중구 공공 야간·휴일 진료위원회」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.

1. 공공 야간·휴일 진료위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구청장이 공공 야간·휴일 진료위원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비용 등 관련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중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
2. 중구보건소 의약과장(의무업무 부서의 장)
3.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의사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4.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근무의사
5.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의 장

제9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

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(공무원 제외)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별표

[별표 1] 야간·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운영기준

[별표 2] 야간·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원비

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·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 조례 [별표1]

야간·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운영기준(제4조 관련)

구 분	내 용
운영시간	<p>연중(평일 야간, 주말·공휴일) 최소 3시간 ~ 최대 6시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평일야간 : 19시 ~ 다음날 1시</li> <li>- 토요일 : 15시 ~ 21시</li> <li>- 일·공휴일 : 9시 ~ 21시 사이</li> </ul>
진료범위	가정의학과, 내과, 소아청소년과, 이비인후과 등 경증 환자의 일차적 진료
참여유형 (택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1개 의료기관이 연중(평일 야간, 휴일) 단독 진료</li> <li>② 2~3개 의료기관이 연합(컨소시엄)으로 참여하여 연중 진료</li> </ul>

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 야간·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정 및 지원 조례 [별표2]

야간·휴일 건강지킴이 진료의원 지원비(제4조 관련)

구분	지정시간	지원금
평일 야간	19시 ~ 다음날 1시	100천원/시간
토요일	15시 ~ 당일 21시	100천원/시간
일요일, 공휴일	9시 ~ 당일 21시	150천원/시간

※ 지원가능 운영시간 : 일 최소 3시간~최대6시간